회계학 2부

<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문제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 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의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각각의 [물음]은 서로 독립적이다.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30점)

<자료 1> 다음은 (주)한국의 개발비 등에 대한 자료이다.

1. (주)한국은 2017.1.1.부터 신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7.10.1.제품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동일자부터 신제품의 판매를 시작하였다.
2. (주)한국은 신제품 개발기간에 지출한 ₩1,200,000,000을 개발비(무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중에는 해당 신제품 개발부서의 임원으로 근무해 오다 2017.9.30. 퇴직한 갑의 인건비 ₩235,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동 인건비는 당해 사업연도 중 임원 갑의 9개월분(2017.1.1.~2017.9.30.)의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으로 구성된다.
3. 임원 갑의 퇴직 직전 1년간 지급한 급여는 ₩120,000,000(매월 ₩10,000,000 지급)이고, 퇴직 직전 1년간 별도로 상여금 ₩60,000,000(매월 ₩5,000,000 지급)을 지급하였으며, 퇴직시점(2017.9.30.)에 지급한 퇴직금은 ₩100,000,000이다. 해당 임원의 입사일은 1998.7.1.이고, 2013.9.10.에 임원으로 승진되었으며, 임원으로 승진하던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한 바 있다.
4. (주)한국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르면, 임원의 상여금 지급한도는 급여총액의 40%이고, 퇴직급여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한편, (주)한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므로 퇴직시에 지급한 퇴직금을 모두 퇴직급여(당기비용)로 회계처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산의 원가로 배분하고 있다. 그리고 임원 갑에 대해 지급한 급여총액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이다.
5. (주)한국의 개발비 상각기간은 5년으로 신고하였고, ₩240,000,000을 개발비상각비 계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자료 2> 다음은 (주)한국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1.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금액과 법인세법상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재무상태표상 금액	법인세법상 평가금액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제품	₩10,000,000	₩15,000,000	₩10,000,000
재공품	4,000,000	4,000,000	3,200,000
원재료	1,800,000	1,900,000	1,500,000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 (주)한국은 제16기 사업연도까지 제품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여 왔으나, 제17기 사업연도부터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7.10.31.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였다.
3. (주)한국은 제16기 사업연도까지는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17.8.4.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였다.
4. (주)한국은 원재료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여 전기 사업연도 이전부터 적용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주)한국은 제17기 사업연도에 신고한 방법(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계산상의 착오로 실제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5.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말의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결과, 저장품의 부족금액 ₩160,000 을 발견하여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기타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부족금액이 발생한 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족사유 구분	시 가	원 가
정상적인 파손	₩100,000	₩78,000
대주주*의 개인적 사용	80,000	59,000
사유를 알 수 없음	30,000	23,000
합계	₩210,000	₩160,000

* (주)한국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개인임

<자료 3> 다음은 (주)한국의 접대비 등에 대한 자료이다.

1.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접대비 지출액은 ₩7,000,000 으로 (주)한국은 이 중 ₩5,800,000 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200,000 은 모두 건물(당기 중 완공됨)의 원가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다.
2.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접대비 ₩5,800,000 중에는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 ₩1,000,000 이 포함되어 있다. 동 금액 중 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700,000 이며, 나머지 ₩300,000 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명서류도 수취하지 못하였다. (주)한국의 모든 접대비 지출은 지출건당 1만원을 초과하였다.
3. 상기 건물은 2017.4.1. 준공과 동시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3,600,000 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동 건물의 취득원가는 ₩72,000,000 (접대비 지출액 ₩1,200,000 포함)이고, 신고한 내용연수는 20년(상각률 0.050)이다.
4.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은 ₩1,000,000 으로 가정한다.

<자료 4> 다음은 (주)세종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1. (주)한국은 2017.4.1. 에 당사의 전무이사로부터 (주)세종의 보통주 20,000주를 주당 ₩17,000 에 매입하여 매입가격을 동 주식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2. (주)세종의 보통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주)세종의 총 발행 보통주식수는 200,000주이며, 2017.4.1. 에 (주)한국은 동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주)세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3. (주)한국은 2017.6.30.에 상기 주식 중 10,000주를 거주자인 당사의 대주주(당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님)에게 1주당 ₩16,000에 처분하였다.
4. (주)세종 주식의 2017.4.1.과 2017.6.30.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각각 주당 ₩20,000과 ₩21,000이다.

<자료 5> 다음은 (주)고려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련된 자료이다.

1. (주)한국은 2015.1.1. (주)고려의 주식 1,500주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주당 ₩5,000에 매입하여, 매입가격을 동 주식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주)고려는 법인세법상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한다.
2. (주)한국은 2016.1.1. (주)고려가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1,875주의 무상주를 수령하였다. (주)고려가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이고, (주)고려의 무상주 교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구분	무상주 교부 직전		무상주 교부 수량
	보유 수량	보유 지분율	
(주)한국	1,500주	30%	1,875주
기타 주주	2,500주	50%	3,125주
자기주식	1,000주	20%	-
합계	5,000주	100%	5,000주

3. 상기 무상주 자본전입의 재원은 다음과 같으며, (주)한국은 무상주의 수령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0,000,000
 (2)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일: 2015.2.25.) ₩5,000,000
 (3) 이익잉여금 ₩10,000,000
4. (주)한국은 2017.3.15. (주)고려의 주식 675주를 주당 ₩4,000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현금	2,700,000	(대)	금융자산	2,160,000
				금융자산처분이익	540,000

5. (주)한국은 2017.10.1. (주)고려가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주)고려의 주식 1,350주에 대한 감자대가로 주당 ₩4,000을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현금	5,400,000	(대)	금융자산	4,320,000
				금융자산처분이익	1,080,000

6. (주)한국은 (주)고려의 주식을 매 사업연도 말 시가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고려 주식의 각 사업연도 말 1주당 시가는 다음과 같다.

제15기 말	제16기 말	제17기 말
₩7,000	₩3,200	₩3,500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자료 6> 다음은 (주)한국의 주식선택권 등에 대한 자료이다.

1. (주)한국은 2016.1.1. 영업부서 임직원 100명에게 1인당 100개의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여된 주가차액보상권은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 간 근로용역 제공을 전제로 약정된 시기에 권리행사시점의 (주)한국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3,000)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은 2017년 말부터 향후 2년 간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2017.12.31. 당초 부여된 주가차액보상권의 40%인 4,000개의 권리가 행사되었다.
 (3) (주)한국은 부여한 주가차액보상권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2017.12.31.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주식보상비용	8,500,000	(대)	장기미지급비용	8,500,000
(차)	장기미지급비용	4,800,000	(대)	현금	4,000,000
				주식보상비용	800,000

2. (주)한국은 2015.1.1. 생산부서 임직원 50명에게 1인당 1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 간 근로용역 제공을 전제로 약정된 시기에 (주)한국의 주식을 행사가격(₩3,000)에 매수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임직원은 2017년 초부터 향후 3년 간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2017.12.31. 당초 부여된 주식선택권 전부인 5,000개의 권리가 행사되었다.
 (3) (주)한국은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권리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240 이다.
 (4) (주)한국은 2017.12.31.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현금	15,000,000	(대)	자본금	5,000,000
	주식선택권	1,200,000		주식발행초과금	11,200,000

3. 각 시점별 (주)한국 주식의 1주당 시가와 부여된 주가차액보상권 및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2016.1.1.	2016.12.31.	2017.12.31.
주식의 시가	₩3,000	₩3,600	₩4,000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	200	700	1,200

4. 주가차액보상권 또는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주)한국의 모든 임직원은 2017.12.31.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부여한 주식선택권 등은 세법에서 정하는 성과급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답안양식> 물음에 대한 답안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고, 계산근거는 아래 양식과는 별도로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며,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물음번호	조정유형	과 목	금액(단위: ₩)	소득처분
[물음 ×]	<익금산입>	토지 A	××	(유보)
	<손금산입>	토지 B	××	(△유보)
	…	…	…	…
[물음 ×]	<손금불산입>	토지 C	××	(유보)
	…	…	…	…

[물음 1] <자료 1>에 따라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5점)
[물음 2] <자료 2>에 따라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4점)
[물음 3] <자료 3>에 따라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6점)
[물음 4] <자료 4>에 따라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3점)
[물음 5] <자료 5>에 따라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6점)
[물음 6] <자료 6>에 따라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6점)

【문제 2】 2016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주)대한(연결모법인, 지주회사가 아님)과 (주)민국(연결자법인)은 모두 중소제조업이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2017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주)대한의 (주)민국에 대한 지분율은 100%이며, 2016년도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주)대한의 사업연도는 제17기(2017.1.1.~2017.12.31.)이며, (주)민국의 사업연도는 제7기(2017.1.1.~2017.12.31.)이다. (20점)

<자료 1> (주)대한과 (주)민국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 분	(주)대한	(주)민국
당 기 순 이 익	320,000,000	46,000,000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80,500,000	20,380,000
법 인 세 비 용	44,000,000	4,500,000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	7,000,000	3,000,000
접 대 비 한 도 초 과 액	19,500,000	12,880,000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10,000,000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38,820,000	7,290,000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38,820,000	7,290,000
차 가 감 소 득 금 액	361,680,000	59,090,000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16,591,000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361,680,000	75,681,000

<자료 2> (주)대한과 (주)민국의 접대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대한	(주)민국
접대비 총 지출액*1	₩73,000,000	₩46,000,000
적격증명서류 수취분*2	66,000,000	43,000,000
영수증 수취분	7,000,000	3,000,000
매출액	₩12,500,000,000*3	₩8,460,000,000*4

*1. 접대비는 모두 건당 1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하여 발생한 것이며, 문화접대비는 없다.
*2. 적격증명서류 수취분 중 (주)대한의 ₩4,000,000 과 (주)민국의 ₩8,000,000 은 연결법인에 대한 접대비이다.
*3. (주)대한의 매출액에는 연결법인과의 거래분은 없으며, 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도 없다.
*4. (주)민국의 매출액에는 (주)대한에 대한 매출액 ₩6,000,000,000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없다.

<자료 3> 연결납세 대상법인 간 추가로 이루어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주)대한은 2017.7.1. 건축물(장부가액 ₩100,000,000)을 (주)민국에 ₩90,000,000 에 매각하면서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정확하게 계상하였다. (주)민국은 취득한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신고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잔존가치 ₩0)으로 상각하였다.
2. (주)민국은 2017.8.3. 금융투자상품(장부가액 ₩100,000,000)을 (주)대한에 시가 ₩105,000,000 에 매각하고 금융투자상품처분이익을 정확하게 계상하였다. (주)대한은 2017.9.2. (주)민국으로부터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중 30%를 (주)부산에 ₩35,000,000 에 처분하면서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하였고, 70%는 2017.12.31. 현재 보유하고 있다.
3. (주)대한은 연결대상 법인이 아닌 (주)국세에 대한 매출채권(장부가액 ₩100,000,000)을 2017.9.5. (주)민국에게 매각하면서 매출채권처분손실 ₩3,000,000 을 계상하였다. (주)민국은 2017.12.31. 현재 해당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자료 4> 2017.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주)대한과 (주)민국의 매출채권, 미수금 및 대손충당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대한	(주)민국
매출 채권	₩600,000,000	₩250,000,000
대손충당금	(12,000,000)	(2,500,000)
미 수 금	₩400,000,000*	₩130,000,000
대손충당금	(8,000,000)	(1,300,000)

* (주)대한의 미수금 ₩400,000,000 중 ₩180,000,000 은 (주)민국에 대한 미수금이며, 이것을 제외한 (주)대한의 다른 채권과 (주)민국의 채권은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채권이다.

<자료 5> (주)대한은 (주)민국, (주)국세 및 (주)세무에, (주)민국은 (주)국세와 (주)세무에 투자하고 있으며, 모든 투자는 최초 투자 후 2017년 말까지 지분율 변동은 없었다.

구 분	(주)대한의 투자내역			(주)민국의 투자내역	
피투자회사	(주)민국	(주)국세	(주)세무	(주)국세	(주)세무
주식취득일	2014.5.31.	2014.12.5.	2015.3.20.	2015.1.20.	2015.6.30.
주식장부가액	₩300,000,000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90,000,000
지분율	100%	30%	30%	20%	20%
상장여부	비상장	상장	비상장	상장	비상장
배당금수익	₩30,000,000	₩30,000,000	₩15,000,000	₩20,000,000	₩10,000,000
배당기준일	2016.12.31.	2016.12.31.	2017.6.30.	2016.12.31.	2017.6.30.
배당확정일	2017.3.23.	2017.3.11.	2017.9.24.	2017.3.11.	2017.9.24.
자산총액	₩1,000,000,000	₩500,000,000	₩400,000,000	₩500,000,000	₩400,000,000
지급이자	₩30,000,000	₩20,000,000	₩15,000,000	₩20,000,000	₩15,000,000

1. (주)대한과 (주)민국은 수입배당금액을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한다.
2. (주)대한의 자산총액은 ₩5,000,000,000 이며, 연결법인 간 수취채권과 연결법인의 주식으로 자산총액에서 상계할 금액은 ₩600,000,000 이다.
3. (주)대한의 지급이자는 ₩60,000,000 이며, (주)대한과 (주)민국의 지급이자는 모두 정상적인 차입거래를 통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주)대한과 (주)민국 간 차입거래는 없다.

<자료 6> 금전기부를 통해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된 기부금은 (주)대한 ₩35,000,000 과 (주)민국 ₩25,000,000 으로 모두 지정기부금이다. (단, 전기까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없으며, 지정기부금 이외 다른 기부금은 없다.)

<자료 7>

1. 2017.12.31. 현재 (주)대한과 (주)민국의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없다.
2. 2017.8.19. (주)대한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5,000,000 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적절하게 계상하였다.

[물음 1] 2017년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과정을 다음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고, 계산근거는 별도로 간단명료하게 기술하시오. (16점)

항 목	(주)대한	(주)민국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61,680,000	₩75,681,000
2.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① :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① :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① :		
5. 연결 차가감 소득금액		
6.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7. 연결조정 후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가산될 경우 (+), 차감될 경우 (-) 부호를 금액 앞에 반드시 표시하시오.

[물음 2] (주)대한과 (주)민국의 2017년 연결조정 후 연결법인별 소득금액이 각각 ₩388,000,000과 ₩67,000,000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과 연결세율을 계산하시오. (단, 세율은 반올림하여 0.00%와 같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시오.) (4점)

【문제 3】 다음은 거주자 갑(65세)의 2017년도 귀속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금융소득 관련 자료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3,000,000 이 있다. 갑 씨의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은 ₩35,000,000을 초과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2015년 이전 가입분)의 이익 ₩6,000,000 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추가적인 신청을 한 적은 없다.
 (3) 외국에서 수령한 이자(국내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가 ₩2,000,000 이 있다.
 (4) 비상장법인 A로부터 받은 무상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가액: ₩30,000,000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않아서 지분율의 상승을 유발한 금액 ₩10,000,000 포함)
 ②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받은 무상주 가액: ₩10,000,000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 사업소득 관련 자료

(1) 갑 씨는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가용 빌딩(갑 씨의 지분율은 60%이며, 공동사업의 지분율은 사실과 합치된다.)을 2016년도부터 임대하고 있는데, 2017년의 연간 임대료는 ₩10,000,000 이다. 임대보증금은 ₩200,000,000 이며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이자 ₩300,000 과 유가증권처분이익 ₩500,000 을 얻었다.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로 가정한다.

(2) 임대용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토지가액 ₩200,000,000 을 포함하여 ₩300,000,000 이다.

(3) 위 상가 임대에 따른 필요경비는 ₩5,000,000 이며, 이 필요경비에는 공동사업용 건물의 취득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 ₩700,000 이 포함되어 있다.

3. 근로소득 관련 자료

(1) 급여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1,250,000×12회)	₩15,000,000
② 상여금(연 8회)	8,000,000
③ 시간외근무수당	3,000,000
④ 자녀 교육비 보조금	1,000,000
⑤ 식대보조비(₩200,000×12회)	2,400,000*
	₩29,400,000

* 회사가 외부 음식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식권으로 받은 것이다. 이 식권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2) 회사는 갑 씨의 사회보장성 보험료 연간 총액 ₩960,000 (매월 ₩80,000 씩 12개월분이며, 이 금액은 종업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이 각각 50%씩 구성된다고 가정한다.)을 전액 부담하였다.

(3) 회사는 2017.3.10.에 잉여금처분 결의를 하면서 갑 씨에게 성과급 ₩10,000,000 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도분 법인세 신고(신고일 2017.3.15.)를 하면서 갑 씨에게 인정이자로 ₩2,000,000 을 처분하였다.

(4) 갑 씨는 생산직 근로자이고,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0,000 이하이다.

4. 연금소득 관련 자료

(1) 갑 씨의 연금계좌는 2013.2.28. 이전에 가입한 것으로 2016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갑 씨가 2016년에 수령한 연금은 ₩2,000,000 이다.

① 2017.1.1.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150,000,000

② 연금계좌에 불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의 합계: ₩10,000,000

③ 연금계좌에 포함된 이연퇴직소득: ₩30,000,000

(2) 갑 씨는 2017년도에 위 연금계좌에서 ₩50,000,000 을 수령하였다.

(3) 갑 씨의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 이연 당시에 산출한 퇴직소득세는 ₩400,000 이다.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5. 양도소득 관련 자료

갑 씨는 자신이 4년 간 보유하던 상가건물(등기자산)을 2017년도 중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200,000,000 에 양도하였다. 이 건물의 양도당시 시가는 ₩150,000,000 이었기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갑 씨에게 인정소득이 처분되었다. 양도한 건물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취득가액: ₩85,000,000*1

(2)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2

(3)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 ₩15,000,000*3

*1. 취득가액에는 ₩2,000,000 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영수증은 분실한 상태이다.

*2.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사업의 필요경비로 장부상 계상한 금액이다. (단, 양도당시 상각부인액 ₩4,000,000 이 있다.)

*3. 공정가액보다 10%를 더하여 준 부동산중개수수료 ₩5,500,000 이 포함되어 있다.

6.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4,500만원)× 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1억원)× 2%

(2)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총 연 금 액	연 금 소 득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총연금액－350만원)×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총연금액－700만원)×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총연금액－1,400만원)×10%

[물음 1] 종합과세할 금융소득을 다음의 구분별로 구하시오. (6점)

1.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다음의 양식을 이용하여 판단하시오.

항목	금액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비과세·분리과세 등
계			

2. 배당가산액(Gross-Up금액)을 구하시오.
3. 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을 구하시오.

[물음 2]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6점)

1.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구하시오.
2.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하시오.
3. 갑 씨의 사업소득금액을 구하시오.

[물음 3]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6점)

1.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를 구하시오.
2.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총급여액)을 구하시오.
3. 근로소득금액을 구하시오.

[물음 4]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단, 종합소득금액 최소화를 가정한다.) (6점)

1. 연금수령한도를 구하시오.
2. 연금수령과 관련한 원천징수세액을 구하시오.
3. 종합과세할 연금소득금액을 구하시오.

[물음 5]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서 구하시오. (6점)

구분	가액(계산내역 별도 제시)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문제 4】 다음은 과세사업(제조 및 임대용역)과 면세사업(교육용역)을 겸영하는 (주)서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017.4.1.~2017.6.30.)과 관련된 자료이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물음에 답하시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 및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20점)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자료 1>

1. 수출업체에 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급하였다.

거래처	매출액	내국신용장 개설일	제품 인도일
A	₩10,000,000	2017.3.20.	2017.4.1.
B	20,000,000	2017.7.30.	2017.6.25.

2.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으며, 2017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액 중 ₩10,000,000 의 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금액 ₩5,000,000
 (2)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로 결제 받고 신용카드사에서 보전 받은 금액 ₩3,000,000
 (3) 현금결제액 ₩2,000,000

3. 2017.3.10.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주)세종으로부터 동종의 원재료(원가 ₩1,000,000, 시가 ₩1,200,000)를 차용하였으며, 2017.4.10.에 동종의 원재료(원가 ₩1,000,000, 시가 ₩1,300,000)로 반환하였다.

4. 회사는 노후화된 장비를 매각하고 기존장비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존장비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비	실제 인도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C*1	2017.5.20.	₩10,000,000 (2017.2.1.)	₩10,000,000 (2017.5.1.)	₩10,000,000 (2017.8.30.)
D*2	2017.5.30.	15,000,000 (2017.5.30.)	15,000,000 (2017.12.30.)	15,000,000 (2018.6.30.)

*1. 최초 계약 시에는 잔금지급일에 장비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2. 2017.5.30.에 장비를 인도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장비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2017.4.1.부터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525,000,000 (취득세 ₩25,000,000 포함)이며, 취득일은 2015.5.20.(사용 개시일 2015.7.15.)이고 전용당시 장부가액과 시가는 각각 ₩400,000,000 과 ₩600,000,000 이다.

6. 회사는 제조업과 교육사업에 겸용하던 토지와 건물 및 임대중인 기계장치를 2017.6.1.에 ₩500,000,000 (부가가치세 제외)에 일괄양도 하였으며, 잔금지급일은 2017.6.30.이다. 기계장치는 2016.12.1.부터 1년 간 보증금 ₩10,000,000, 월임대료 ₩1,000,000 에 임대 중이었으며, 임대료는 매월 말 수령하였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6%이다. 매매계약서 상 각각의 공급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구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감정가액
토지	₩80,000,000	₩80,000,000	₩80,000,000	₩120,000,000
건물	200,000,000	180,000,000	120,000,000	160,000,000
기계장치	100,000,000	50,000,000	-	70,000,000
합계	380,000,000	310,000,000	200,000,000	350,000,000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는 계약일 현재 가액이며, 감정가액은 2016.6.30.을 기준일로 평가한 가액이다.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으로서 세무상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은 ₩10,000,000 이다. 한편,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는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였으며, 취득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1/2씩 사용하고 있다.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각각 ₩300,000,000 과 ₩200,000,000 이다.

7. 매출채권 중 회수가 지연된 채권내역은 다음과 같다. 각 채권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1) 2015.4.20.에 발생한 매출채권 ₩110,000,000 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7.3.25.에 거래처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보통주 10,000주로 출자전환 되었으며, 동시에 80%를 무상감자하여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는 각각 ₩10,000,000 과 ₩30,000,000 이다.
 (2) 회사는 매출채권 ₩99,000,000 에 대하여 전액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17.5.17.에 ₩44,000,000 을 회수하고 잔액은 포기하였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 관련 신고내용을 아래의 답안양식에 기입하시오. (12점)

자료번호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
1			
2			
…			

<자료 2>

1. (주)서울의 제조부문과 관련된 예정신고 누락사항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7.3.30.에 원재료를 매입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5,000,000 을 예정신고시 누락하였다.
 (2) 2017.4.15.에 사내 워크샵에 독립적으로 강연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연료 ₩500,000 을 지급하였다.
 (3) 2017.6.1.에 공급받은 원재료 ₩10,000,000 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2017.6.1.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2017.7.25.에 수취하였다.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4) 2017.6.10.에 소모품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현금영수증 ₩300,000 을 수취하였으며, 2017.6.15.에 간이과세자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1,000,000 의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5) 회사는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무사 수수료 및 중개 수수료 ₩5,000,000 을 2017.6.20.에 지급하였다.

(6) 2016년 제2기에 기계장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2016.12.1.에 ₩10,000,000, 2017.3.10.에 ₩20,000,000 을 지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17.6.25.에 계약이 취소되었다.

2. 2017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옹벽공사를 완료하였다.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감정가액은 없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일괄구입가격: ₩300,000,000 (부가가치세 제외)
 (2) 기준시가: 토지 ₩180,000,000, 건물 ₩20,000,000
 (3) 건축물 철거비용: ₩20,000,000
 (4) 옹벽공사비: ₩25,000,000
3. 2017.6.20.에 임대중인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문수수료로 ₩10,000,000 을 지급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는 각각 ₩80,000,000 과 ₩200,000,000 이다.
4.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무용 비품 등 일부를 인원변동에 따라 2017.5.10.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취득일	취득가액	매입세액
책상 및 의자	2014.2.10.	₩5,000,000	₩500,000
개인용 컴퓨터	2016.4.20.	6,000,000	600,000
회의실 비품*	2016.7.12.	10,000,000	1,000,000
소모품	2017.3.25.	3,000,000	300,000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은 각각 40%와 60%이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을 아래의 답안양식에 기입하시오. (8점)

자료번호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액	매입세액 공제액
1	(1)			
	(2)			
	…			
2				
…				